

서울특별시립병원  
HIV 감염인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

# 서울특별시립병원 HIV 감염인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

---

1. 모든 환자는 나이, 성별, 장애, 피부색, 국적, HIV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하고, 공정하며 정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HIV에 대한 인식 및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수행해야 한다.
3.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HIV 감염인을 대하는 것에 숙련되어 있어야 하며, 감염관리 기준에 근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HIV 감염인에 대한 진료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구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관리 기준에 근거하여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5.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환자의 신체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특성에 따른 차별이 없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HIV 감염인 및 의심 환자와 대면하는 모든 상황에서 혐오나 경멸 등을 뜻하는 언어적·비언어적 의사표현을 해서는 아니 된다.
7.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인지한 모든 HIV 감염인의 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8. 의료기관 내에서 HIV 감염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별도 표지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HIV 감염인 및 의심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표준 예방 지침 이상의 과도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한다.
10.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소문 및 의료기관의 수익을 이유로 진료거부를 하거나, 감염관리 기준에 근거한 보편적인 조치 외 별도의 장비 및 시설

의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HIV 감염인의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 된다.

11.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임상적으로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사유 없이 HIV 감염인의 수술 및 입원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모든 HIV 감염인은 시술 및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적절한 정서적 지지 및 배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13. 모든 HIV 감염인은 자신의 치료와 관련된 정확하고 적절하며 이해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아야 하며,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환자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14.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의료기관의 진료역량에 따라 최선을 다해 진료하되 필요시 타 의료기관과 연계하도록 한다.